

등록금 환불 신청서

소속학과		전공		등록학기	
성명		학번		연락처	

은행명		계좌번호		관계	본인
-----	--	------	--	----	----

환불사유	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<p>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(등록금의 반환)</p> <p>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과오납의 경우2.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, 질병,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<p>② 전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재학중인 경우: 자퇴원서 제출일2. 휴학중인 경우: 휴학일 <p>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학기개시일 당일까지: 전액 반환2.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: 6분의 5 반환3.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: 3분의 2 반환4.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: 2분의 1 반환5.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6.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, 90일이 토,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,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. <p>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.</p>
--

본인은 20__학년도 __학기에 (재학생, 신입생)으로 등록금을 냈으나, 위 사유로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_____ (인)

아 주 대 학 교 총 장 귀 하